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

발의연월일: 2024. 6. 7.

발 의 자 : 임종득 · 김정재 · 송언석

김상훈 • 이상휘 • 권성동

서천호 · 김형동 · 강대식

유용원 • 이인선 • 구자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이를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국장급 공무원도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할 경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제3항).

법률 제 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25명"을 "2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②
함한 <u>2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	<u>28명</u>
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	3
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이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 <u>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u>	<u>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u>
<u>의</u> 실·국장급 공무원으로서	<u>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u>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	중소벤처기업부의
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	
하는 사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